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인정 〉

■ 박지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012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인정	3
2. 관계기관 의견	12

I .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지원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4. 22.

(3) 회 부 일 : 2025. 4.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판단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응하기 위해 기여분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1)이 기 발의되었고,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입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혀왔음.

그러나 법원행정처에서는 기여분 제도와 유류분제도의 단절을 해소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 대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발의된 의안만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 피상속인이 기여상속인에게 사전증여 또는 유증한 부분에 대해 기여를 고려하여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개진하였음.

이에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관련해 단서를 신설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기여에 상응한 증여나 유증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피상속인이 기여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 또는 유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 1008조 개정).

Ⅲ. 검토의견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인정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그 기여에 상응하여 증여 또는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1008조 단서 신설).

현 행	개 정 안
第1008條(特別受益者の 相續分) 共同相續人 中에 被相續人으로부터 財産의 贈與 또는 遺贈을 받은 者가 있는 境遇에 그 受贈財産이 自己의 相續分에 達하지 못한 때에는 그 不足한 部分의 限度에서 相續分이 있다. <단서 신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 ----- ----- ----- ----- 단 만,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 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그 기여에 상응하여 증여 또는 유증 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증여 또는 유 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현행 「민법」상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유류분

현행 「민법」 제1008조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

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¹⁾,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시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²⁾.

여기에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게 됨³⁾.

이러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

1)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2) 민유숙, 『주식 민법(상속)』, 2020.7., 225면.

3)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대법원 2014. 11. 25. 선고 2012스156, 157 결정

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 상속분이 결정됨⁴⁾.

한편, 「민법」 제1118조에서는 유류분에 대한 준용 규정을 두어, 제1001조(대습상속)⁵⁾,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⁶⁾, 제1010조(대습상속분)⁷⁾의 규정은 유류분에 있어서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008조의 준용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시기의 여하 또는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특별수익자가 유류분권자인 경우 그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해당 특별수익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공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⁸⁾.

4)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5)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6)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7)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유류분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5.3.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

다만,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 포함시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⁹⁾.

초재산에 산입된다 고 할 것이다.”

9)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본소), 2021다230090(반소) 판결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그 기여에 상응하여 증여 또는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여상속인이 상속 관계에서 그 기여의 대가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의 범위에 포함시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¹⁰⁾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10)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본소), 2021다230090(반소) 판결

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아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으므로 개선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들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민법이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면서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 상속인(이하 ‘기여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제1008조의2 참조). 그런데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성질과 절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이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은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해달라는 취지의 항변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중간 생략…)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25.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위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는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등을 개정하여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바,

기여상속인의 기여분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①개정안과 같이 보상적 증여 또는 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방안, ②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771호)¹¹⁾ 과 같이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등을 개정하여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 ③유류분과 기여분과의 관계에 있어 ‘준용’규정의 개정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준용 규정이 아닌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하는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유류분과 기여분의 단절을 해소하는 방안¹²⁾ 등 다양한 개선입법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관련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법제적 측면의 보완 사항으로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에 한정하여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771호)

현 행	박지원의원안
第1008條의2(寄與分) ① ~ ③ (생략)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는 第10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을 경우 또는 第1014條에 規定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第1118條(準用規定) 第1001條, 第1008條,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 이를 準用한다.	第1008條의2(寄與分)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013조 제2항에 의한 청구나 제1115조제1항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第1118條(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준용한다.

12) 이동진, “기여분, 보상적 증여, 유류분-헌법적, 비교법적 및 입법론적 고찰”, 가족법연구 제38권제3호, 2024.11. 661~665면. 현소혜,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에 관한 개정 방안”, 가족법연구 제39권 제1호, 2025. 3. 209면.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등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상당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에 대한 기여도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¹³⁾의 규정을 참고하여 요건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13)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보상적 증여·유증을 받은 기여상속인이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되는 불합리를 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여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기여상속인에게 기여의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함으로써 개선 입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기본적인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제1항의 문언을 고려한다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는 경우에 대한 기여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참고하여 개정안 문언의 보완이 필요하고,

개정안에 따르면 기여한 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지 못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기여분이 고려될 수 없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기여는 보호할 수 없으며,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자와 반환의무자만이 당사자가 되므로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간의 기여 정도를 형량하여 상대적으로 기여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여분의 고려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